

1. 개정이유

신기술 사후평가서 제출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('21년도 국정감사)에 따라, 사후평가서 작성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자 확대(안 제54조, 별지 제21호 서식)

- 사후평가서 작성시,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(안 제54조)
-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에게 사후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발주청 담당자가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별첨,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 훈령 제1564호

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- 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, 발주청은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기술 사후평가서

작성일: 년 월 일

1. 신기술 및 공사개요

신 기술 명	(지정번호 :)
기술개발자	

공 사 개 요	발주자		시공사	
	개발자 참여형태	☐ 직접참여(기술사용료 미지급) ☐ 기술지도(기술사용료 지급) ☐ 자재, 장비 납품		
	공사명 (계약명)	도급 공사명: 하도급 공사명: ※ 하도급 공사명을 모르는 경우 생략 가능		
	현장주소			
	총공사비	원	신기술 공사비	원
	총공사기간	~	신기술 공사기간	~

2. 활용 평가

평가시기	☐ 준공 ☐ 하자 보수공사 준공
------	---

평가항목	세부 평가기준			
공사비절감	단위당 관련된 비용(시공비, 유지관리비 등)과 기존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의 개선비용을 비교한다.			
	구분	기존 기술(A)	신기술(B)	공사비 절감(A-B)
	단위 수량 ()	원	원	원
	공사비절감 평가점수 : () - 공사비절감 평가점수 = 15 + [10 × (기존 기술 공사비 - 신기술 공사비) / 기존 기술 공사비] (0~25점)			
공기단축	해당 공정에 대하여 기존 기술과 건설신기술의 공사일수를 비교한다.			
	구분	기존 기술(A)	신기술(B)	단축일수(A-B)
	단위 수량 ()	일	일	일
	공기단축 평가점수 : () - 공기단축 평가점수 = 15 + [10 × (기존 기술 공사일수 - 신기술 공사일수) / 기존 기술 공사일수] (0~25점)			
	세부 평가기준		평가점수	
	매우우수	우수	등등	미흡
				매우미흡

시공성	☐ 시공용이성	☐ +2	☐ +1	☐ 0	☐ -1	☐ -2
	☐ 신기술시방서 준수	☐ +2	☐ +1	☐ 0	☐ -1	☐ -2
	☐ 타공종과 간섭 축소	☐ +2	☐ +1	☐ 0	☐ -1	☐ -2
	☐ 인력 및 장비 적시 투입	☐ +2	☐ +1	☐ 0	☐ -1	☐ -2
	시공성 평가점수 : (					

※ 해당란에 ○표

3. 신기술 활용에 대한 의견(유사한 현장에 적용시 참고 사항)

4. 신기술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

5. 작성자 및 확인자(비공개)

작성자	소속기관		부서	
	전화번호		직위,성명	서명
확인자	소속기관		부서	
	전화번호		직위,성명	서명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4조(신기술의 사후관리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4조(신기술의 사후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 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작성 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, 발 주청은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 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 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 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	④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 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 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 한 경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 다.	⑥ 제4항----- ----- ----- 제5항----- ----- ----- --.